

# 2022년 점자 문서 제공 요청 목록 및 제공 결과

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

## □ 근거

- 점자법 제12조의2(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)

-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(전자점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## □ 운영 결과

- 요구 및 제공 기간: 2022. 1. 1. ~ 12. 31.
-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: 없음

번호	요청 일자	문서명	제공 여부	제공 일자	제공 형태	분량 (목자/점자)
		기간 내 별도 요청 사항 없음				

## □ 향후 계획

- 시각장애인이 요청 시 점자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제공
- 점자 문서 제공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(매년 1월 공개 예정)